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6. 6. 11.  
시민보사위원회

#### 1. 審查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6월 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6년 6월 11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허숙조)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를 구성, 운영하여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구민, 단체 또는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함.
-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3.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專門委員 유제한)

##### □ 목 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의거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직장, 단체 등이 참여하게 하여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또 나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구민의 건강을 향상시켜가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 구민건강 생활실천을 하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온 구민이 건강하고 명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의 내용에 별 문제점은 없으나 제출된 조례안 제10조(구성) 3항의 내용 중 체육전문

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審査結果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1996. 6.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제2조)
-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구민, 단체 또는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함.(제3조)
-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9조)
-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의약 65301 - 169 ('96. 1. 15) :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위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구민, 단체 또는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지도과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6. 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6년 5월 2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5월 3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 및 심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 및 심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 '95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처리
  - 세입(세의수입, 보조금) 증가